

붙임 #1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5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04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1.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4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4
1.4 계획의 개요	5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7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9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0
제3장 주민 등의 대한 의견수렴 계획	21
3.1 의견수렴 계획	23
제4장 부록	25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27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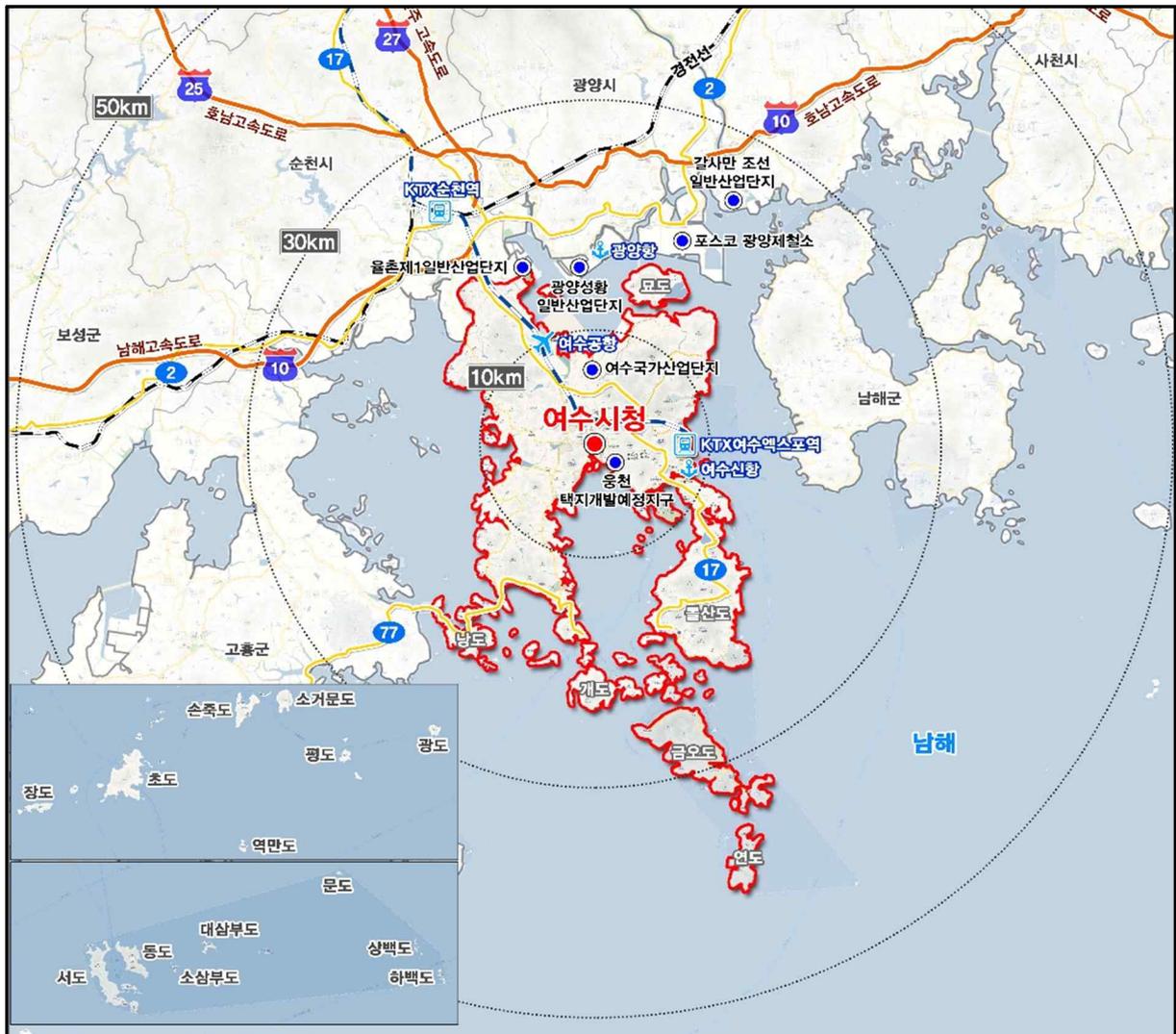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4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여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함.
-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정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여수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그림 1.1-1) 계획지구 위치도

1.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17 :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과업 착수
- 2019. 12. : 시 정책사업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14일간)
- 2020. 02 ~ 03 : 도시계획(공통)위원회 심의 (서면심의)
- 2020. 04.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시고시 제2020-94호)
- 2020. 03. : 장기미집행시설 전수조사 시행
- 2020. 03. ~ 0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정비방안(안) 설정
- 2020. 07. 30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시고시 제2020-234호 , 여수시고시 제 2020-300호)
- 2020. 05. ~ 2021. 0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도출
- 2021. 03. 24 ~ 2021. 04.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면적 : 3,858.64km² (육지부 : 503.83km², 해면부 3,349.81km²)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1.4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2025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3,858.64km² (육지부 : 503.83km², 해면부 3,349.81km²)
- 계획기간 : 2018년 ~ 2025년
- 계획수립기관 : 여수시
- 계획승인기관 : 전라남도 및 여수시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표 1.4-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

구 분	개소수	세부내용								
총 계	1,291									
용도지역	1,002	■ 총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기 정(m²)</th> <th>변 경 후(m²)</th> <th>증 감(m²)</th> </tr> <tr> <td>1,025,646,646.5</td> <td>1,024,815,366.5</td> <td>감) 831,280.0</td> </tr> </table>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1,025,646,646.5	1,024,815,366.5	감) 831,280.0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1,025,646,646.5	1,024,815,366.5	감) 831,280.0						
		■ 도시지역 변경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기 정(m²)</th> <th>변 경 후(m²)</th> <th>증 감(m²)</th> </tr> <tr> <td>302,594,339.5</td> <td>302,610,206.5</td> <td>증) 15,867.0</td> </tr> </table>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302,594,339.5	302,610,206.5	증) 15,867.0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302,594,339.5	302,610,206.5	증) 15,867.0						
		■ 비도시지역 변경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기 정(m²)</th> <th>변 경 후(m²)</th> <th>증 감(m²)</th> </tr> <tr> <td>680,549,742.0</td> <td>679,720,865.0</td> <td>감) 828,877.0</td> </tr> </table>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680,549,742.0	679,720,865.0	감) 828,877.0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680,549,742.0	679,720,865.0	감) 828,877.0						
		■ 용도지역 변경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기 정(m²)</th> <th>변 경 후(m²)</th> <th>증 감(m²)</th> </tr> <tr> <td>42,502,565.0</td> <td>42,484,295.0</td> <td>감) 18,270.0</td> </tr> </table>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42,502,565.0	42,484,295.0	감) 18,270.0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42,502,565.0	42,484,295.0	감) 18,270.0								
■ 지역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 147건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 821건 •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 4건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용도지역 중복지정 (화양지구 제척에 따른 환원) 및 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3건 • 관리지역 내 여건변화 반영 12건 										
용도지구	92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기 정(m²)</th> <th>변 경 후(m²)</th> <th>증 감(m²)</th> </tr> <tr> <td>41,515,617</td> <td>45,063,435</td> <td>증) 3,547,816</td> </tr> </table>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41,515,617	45,063,435	증) 3,547,816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41,515,617	45,063,435	증) 3,547,816								
용도구역	2	■ 도시자연공원구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기 정(m²)</th> <th>변 경 후(m²)</th> <th>증 감(m²)</th> </tr> <tr> <td>58,480</td> <td>1,080,167</td> <td>증) 1,021,687</td> </tr> </table>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58,480	1,080,167	증) 1,021,687
		기 정(m ²)	변 경 후(m ²)	증 감(m ²)						
58,480	1,080,167	증) 1,021,687								
기반시설	170									
교통시설	142	도로(128건), 주차장(12건), 자동차정류장(1건), 자동차운전학원(1건)								
공간시설	17	공원(8건), 녹지(7건), 광장(1건), 유원지(1건)								
유통 및 공급시설	1	배수지(1건)								
공공·문화체육시설	10	공공청사(2건), 문화시설(1건), 체육시설(1건), 학교(6건)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3월 24일~2021년 4월 6일까지 서면심의로 총 10명 위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견을 수렴하였음.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5조
- 주관행정기관 : 여수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0인(소속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등)

구분	소속	성명	직 위	비 고
1	여수시	■	도시계획과장	임명
2	여수시	■	자연환경팀장	임명
3	여수시	■	도시계획팀장	임명
4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무관	위촉
5	전남대학교	■	교수	위촉
6	(주)동일기술공사	■	환경영향평가사	위촉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위촉
8	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	■	지회장	위촉
9	여수환경운동연합	■	사무국장	위촉
10	전남대학교	■	교수	위촉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03.24 ~ 2021.04.06
- 결정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은 변화된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과 여수시 장기 발전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재정비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으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지역 변경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2.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를 참조하여 설정함.

〈표 2.2-1〉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분	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지역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여수시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안설정 및 검토	○ 계획지구 내
자연 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및 동·식물상 등 변화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자연환경 자산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저축 여부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형상 변화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시행시 경관 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및 오수 등 영향이 예상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여수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 계획지구 주변 지역 (여수기상대 기상 자료 참조)
		대기질	○ 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소음·진동	○ 계획시행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오수, 폐기물 등 발생에 따른 적정 처리 필요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 등 영향이 예상	○ 계획지구 및 폐기물 발생구간(여수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계획지구 및 여수시

2.2.3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 “계획비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였음.
- 용도지역 재정비라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No Action, Action)에 따른 대안을 검토하였음.

〈표 2.2.3-1〉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 방법	비고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2.2.3-2〉 대안의 종류 및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선정여부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선정	○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계획개요에 제시
수단·방법	미선정	○계획지구 토지이용계획 비교
수요·공급	미선정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이 아님
입지	미선정	○동일한 대상지역 경계로 비교함
시기·순서	미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가 아님
기타	미선정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없음

나. 대안 설정

1) 대안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

- No Action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비현실적 용도지역 유지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문제가 대두됨.
- Action (사업시행시 계획)
 - 계획시행 시 용도지역 재정비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보호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가 기대됨.

<표 2.2.3-3> 계획비교 대안별(No Action, Action) 검토결과

구 분	대안1(No Action)	대안2(Action)
대안별 개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대안별 특성	○비현실적 용도지역 유지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문제가 대두	○계획시행 시 용도지역 재정비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보호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가 기대

<표 2.2.3-4> 계획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1)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의 고려 여부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 국제협약 및 규범과는 무관한 계획이나 국제환경 동향을 고려하여 검토
	○ 해당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반영 여부	"	○ 관련계획을 준수토록 계획을 수립
	○ 해당계획과 관련성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의 고려 여부	"	○ 관련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2) 국가환경 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반영여부	"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

〈표 계속〉 계획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2) 국가환경 기준·계획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에의 부합 여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환경보전중기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획과는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합토록 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준하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한 연차별, 단계별 구체화 및 실현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계획 및 시책과는 연관성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계획·수립
2) 지역환경 기준·계획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환경기준 및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반영 여부 -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 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및 환경관련 개별법의 기준과 여수시 환경보전계획, 경관계획(건축물 등)과의 연계성 검토하여 준수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각종 조례상의 환경계획 반영여부 -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조례중 환경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 방안 고려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고려한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 생태·녹지축 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의 고려 여부 -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 생태·녹지축 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이 없음

<표 계속> 계획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1) 환경계획의 건전성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의 효율성 여부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 현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의 고려 여부	"	◦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시 공사시 및 운영시 단계별 저감방안 수립할 계획
2) 지속 가능성 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ESSD 이행계획 등	"	◦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친화경적 계획·수립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의 고려 여부	"	◦ 본 계획과는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안)의 계획비교 예측시 타당하게 검토, 분석 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여부	"	◦ 본 계획과는 연관성이 적음
	◦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한 환경계획의 타당성 여부	"	◦ 본 계획과는 연관성이 적음
다. 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여부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
1) 타 행정계획 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 여부	"	◦ 타행정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토록 계획 수립
라. 기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의 반영 여부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사항 없음	◦ 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 계획

〈표 2.2.3-5〉 입지의 타당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대상여부	◦ 계획을 수립하 지 않는 경우로 해당사항없음	◦ 법적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 주요 산림축(백두대간 및 주요정맥 등)의 훼손 여부	"	◦ 계획지역내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없음
	◦ 야생동·식물의 이동로가 되는 능 선 및 계곡 등의 생태적 보전가치 가 높은 지역에 대한 훼손 여부	"	◦ 계획지역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은 없음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에 대한 단절 여부	"	◦ 계획시행으로 녹지축 훼손 없음
2) 생물다양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 여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	◦ 계획시행으로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은 없음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지역의 포함 및 훼손 여부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하천, 호소 등	"	◦ 계획시행으로 생태적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없음
	◦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에 대한 훼손 여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등	"	◦ 계획지역내 야생동·식물의 서 식공간 훼손 없음
	◦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습 지 등에 대한 영향여부	"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영향을 고려하 여 계획을 수립할 계획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경사로 인한 과도 한 지형훼손 여부 및 주변지역과 의 조화에 대한 악영향 여부	"	◦ 계획시행시 지형훼손 없으며,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경관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악영향 여부	"	◦ 계획시행시 경관관련 보전 용도 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악영향 여부 -해안, 호소 등	"	◦ 계획시행시 생태적·경관적 보 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고려 하여 수립할 계획
	◦ 주요 조망점에 대한 심각한 경관 훼손 여부	"	◦ 계획시행시 주변 경관을 고려 하여 수립할 계획

<표 계속> 입지의 타당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1안 (No action)	2안 (Action)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 심화 및 예상지역중 추 가 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달 성에 대한 어려움 여부	◦ 계획을 수립하 지 않는 경우로 해당사항없음	◦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에 영향으로 저감대책 수립
	◦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 영향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	◦ 계획시행으로 각종 보호지역 에 심대한 영향은 없음
	◦ 온실가스배출량 급증 여부 및 수 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할당부하 량 초과 여부	"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 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준하여 수립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 규, 지침 등의 준수 여부	"	◦ 관련 계획 준수하여 저감방안 수립
2)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 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 동, 지하수 등) 악화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	"	◦ 계획지역 주변 생활환경을 고 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 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 여부	"	◦ 개발계획시 공사시 규제기준 을 준수하여 정온한 생활환 경을 유지토록 계획
	◦ 녹지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 예 측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 성에 대한 어려움 여부	"	◦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함에 따라 계획의 특성상 과 도한 녹지훼손은 없음.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 도지역 포함 여부	"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지 않음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 로 한 난개발 가능성 여부	"	◦ 계획시행시 난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다. 기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 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사항 없음	◦ 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수렴 하여 계획수립시 반영 계획

2.2.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선정

가. 평가항목 선정

-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선정 참고자료를 참고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함.

〈표 2.2.4-1〉 평가항목의 선정

구 분		평가 항목	제외 항목
자연환경 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지질	-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 경관	-
	수환경의 보전	○ 수질(수리·수문)	-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부합성	○ 기상 ○ 대기질 ○ 소음·진동	○ 약취 ○ 온실가스 ○ 토양 ○ 일조장해 ○ 전파장해 ○ 위생공중보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자원순환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 인구·주거 ○ 산업

〈표 2.2.4-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항목			선 정 결 과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	제외	
자연 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 본 계획으로 인한 주변 식생 및 동물상 서식형태 변화 영향 검토
		자연환경 자산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저 축요인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본 계획으로 인한 지형변화 개연성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확인

<표 계속>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항목			선 정 결 과		선정 및 제외사유
			평가	제외	
자연 환경 의보 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 개연성 검토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확인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계획 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 수질 영향 요인 검토
생활 환경 의 안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기상개황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계획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 요인 검토
		악 취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악취 발생 요인 미미함.
		온실가스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온실가스 발생 요인 미미함.
		소음·진동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소음 변화 요인 검토
		토 양		○	○계획 시행으로 인한 토양 영향 요인 미미함.
		일조장해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일조장해 발생 요인 미미함.
		전파장해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전파장해 발생 요인 미미함.
	위생공중 보건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유해환경 발생 요인 미미함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 시행으로 인한 기반시설(오수, 폐기물 등)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적정성 검토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검토
	인구·주거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미미함.
	산업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함.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함.

〈표 2.2.4-3〉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분석·평가 방법

평가항목			결정 결과		
			구 분	지역(범위)	방 법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 환경 자산)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현황,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충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 지질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위락·경관현황, 경관자원현황, 환경관련지역 및 지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대상지 및 주변 경관자원 분석 및 경관 등의 영향 예측
	수환경 의 보전	수질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① 조사내용 : 지표수(하천)현황 농도, 오염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자동측정망 자료 등 문헌 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급수 및 오수발생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분석·평가 방법

평가항목			결정 결과		
			구 분	지역(범위)	방 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 합성	기상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여수기상대)	① 조사내용 :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기상연보) 조사
		대기 질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대기오염도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 생량 검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소음 진동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동측정망 자료 등 문헌 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발생 검토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 의 적정성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연계성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및 자체 처리여부 등을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 의 효율 성		친 환경 적 자원 순환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폐기물 발생구간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 및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발생 검토 ○ 운영시 이용객에 의한 폐기물 발생 검토
사회 경제 환경 과외 조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현황조사	○계획지구 및 여수시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여수시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토지이용 변화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3.1 의견수렴 계획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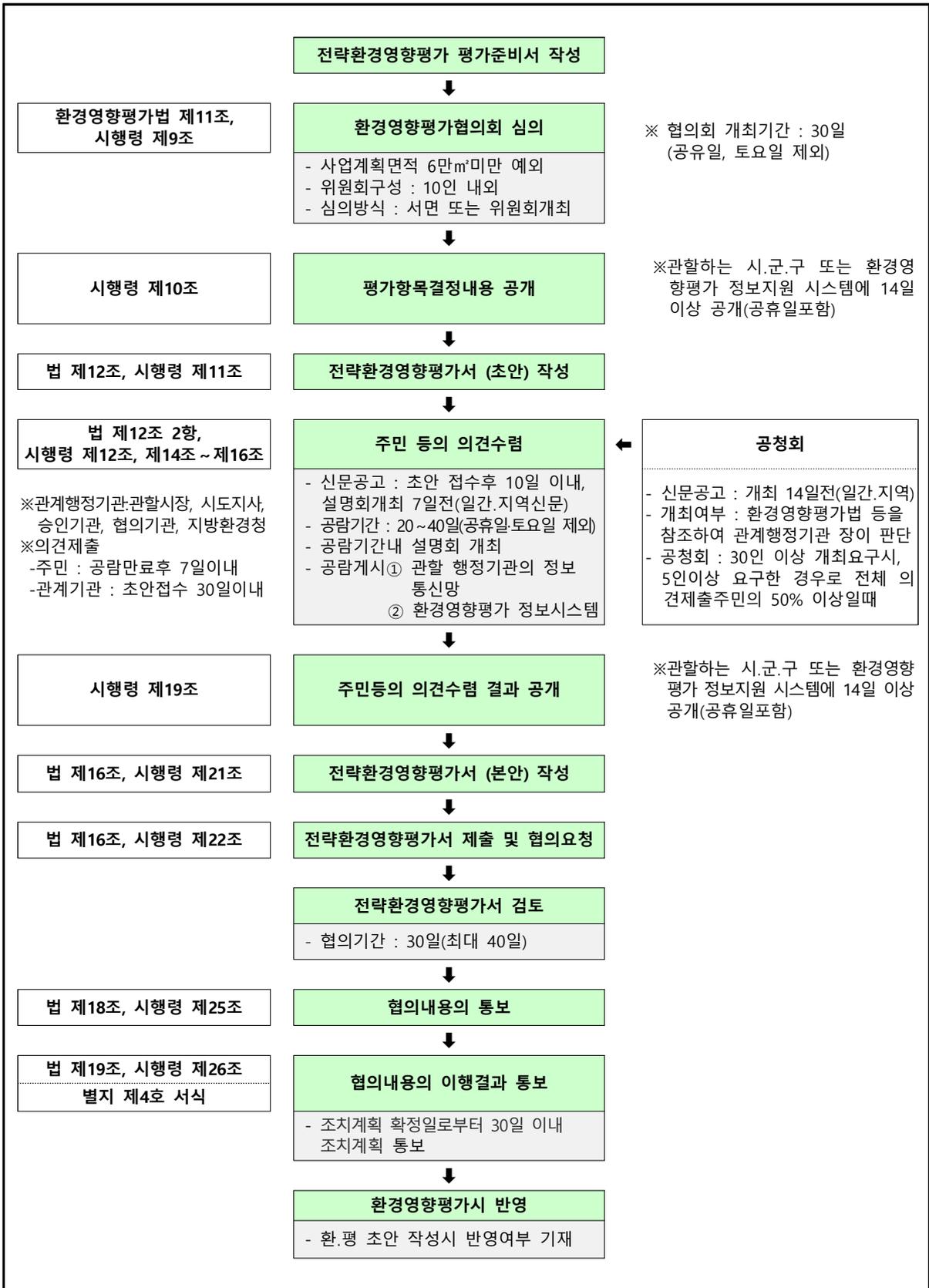
3.1 의견수렴 계획

3.1.1 평가준비서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 여수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

3.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여수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www.eiass.go.kr)에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공고
 - 공람장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20~40일 동안 비치(공람장소는 지자체와 협의)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주민 의견 중 3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계획임.
- ※ 추후 사업진행 과정 중 다른 법령에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부 생략 가능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 제3호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여수시장 등)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임.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제4장 부록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4장 부록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redacted] (여수시 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시행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함
-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대안
 - 의견 없음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은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평가상의 내용은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함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수렴고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함
- 기 타

2021. 4. .

심의위원 : [redacted]

- [redacted] (여수시 자연환경팀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여수시 일원 도시관리 재정비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부합성을 고려하고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3. 대안
 - 적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
 -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함.

2021. 3. 26.

심의위원 :



- [redacted] (여수시 도시계획팀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환경친화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은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지표가 조화롭게 제시 될 수 있도록 해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및 공공성이 조화될 수 해야함
6. 기 타

2021. 4. .

심의위원 : [redacted]

-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여수시 전역(3,858.64km²)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고자 여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개발 기본계획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최대한 확대·설정하고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변경사유 및 관련자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변지역과 획일적으로 일치시키는 용도지역 변경 등 일괄적인 변경사유는 지양하고 대상지역의 특성, 주변지역의 식생 보전상태등을 고려하여 변경사유 제시
 - 계획내용(위치, 면적, 구역계, 변경사유)과 도시관리계획도(전·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최근 토지적성평가, 국토환경성평가, 항공(위성)사진, 생태·자연도, 지형도(표고, 경사 분석자료 포함) 등 관련자료 제시

2. 대안 및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최종으로 이행할 대안과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의 목표, 추진방법, 수요·공급, 대상지역 입지 특성, 토지이용현황 등 환경적 측면을 중점 비교·검토 후 제시
- (토지이용구상안)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내에서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국토환경성평가1·2등급, 생태·자연도 I 등급, 생태·자연도 II 등급이면서 생태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식생보전등급 II 이상 지역, 식생보전등급 III이면서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산지 및 하천 등 생태축 등
 - 쾌적한 주거환경 및 경관 보호, 환경적 악영향 저감 등을 위해 설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축소 지양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국가환경종합계획, 여수도시기본계획, 여수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개발방향과 부합되어야 하며,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거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 외, 계획인구, 도시구상, 토지수요 등 계획의 적적성 검토·제시 필요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지역 내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관 및 대기질 영향을 분석하고 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 훼손 및 대기질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 수립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폐기물량을 예측하고,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수용가능용량 및 관련 계획(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의 부합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인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계획내용 및 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이해가 용이하게 설명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쉬운 용어, 그림, 도표, 시뮬레이션 등 자료 최대한 활용

5. 기 타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환경현황 조사범위는 사업시행 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 시, 조사결과가 사업지구 현황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거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현지조사 등 추가조사 실시
- 승인기관별(전라남도, 여수시) 결정사항을 구분하여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계획대상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경관심의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관 항목의 심의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함

2021. 4. .

심의위원



- (전남대학교 교수)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년 여수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 총괄 의견

- 본 2025년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평가 준비서 심의 및 검토 결과 조사한 항목들의 적정성, 타당성 등은 대체로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결과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예측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상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개별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에 대한 조사 항목,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특이사항 및 이상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 이용에 대한 환경 영향의 조사항목,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시행으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방안에 관한 결과 및 저감방안 대책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대안

- 대안 설정에 대한 환경 계획, 기준,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항목,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결과가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의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음.
- 영향 예측을 위한 선정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한 결과 분석 또한 그 신뢰성이 높음.
- 검토결과 특이사항 및 이상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조사 및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및 결과 유추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 내용의 항목,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 및 이상 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전반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021. 3. 2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 (주)동일기술공사 환경영향평가사)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총괄 의견

- 본 계획의 상위계획 및 환경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정성 등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라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용도지역은 현재의 토지이용, 향후 개발계획 및 환경 관련 보전지역·지구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3. 대안
 - 여수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는 사업의 특성상 계획비교(Action/NO Action) 대안 선정은 적절함.
 -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Action) 현재의 토지이용, 향후 개발계획 및 환경 보전지역·지구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범위 및 방법은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선정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주민들이 본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환경 관련 보전지역·지구와의 저촉 여부를 파악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2021. 3. 2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총괄 의견

-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위성지도,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용도지역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양호한 생태현황을 보존한 지역, 주요 산줄기와 인접한 지역, 우수 및 오염원의 유출 형태변화에 취약한 민간지역 등에 대해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거나 보전을 요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양호한 생태현황을 보존한 지역, 주요 산줄기와 인접한 지역, 우수 및 오염원의 유출 형태변화에 취약한 민간지역 등에 대해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거나 보전을 요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적절함
-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등
 -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위성지도,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용도지역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동식물상) 개별블록 및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양호한 생태현황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생태현황이 양호한 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거나 보전을 요하는 용도로 변경

- (지형지질) 여수시 관내를 통과하는 주요 산줄기 현황을 조사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 및 신규 도시계획시설이 주요 능선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수질) 우수 및 오염원의 유출 형태변화에 취약한 민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1km 이내 집수구역, 하천인접 집수구역, 재해위험지역, 하수미차집구역 등)은 수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용도지역을 유지하거나 보전을 요하는 용도로 변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결정사항 등에 대해 온라인 공지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결과를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장소에 본 계획수립의 주체인 여수시가 아닌 강화군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오류 확인필요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3. 24.

심의위원



- [redacted] (전국이통장연합회 여수시지회 지회장)

[서식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총괄 의견

- 전반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다소 미흡함
3. 대안
 - 초기 공사시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소로 교통망 계획에 있어서는 격자형 도로망이 미래를 봐서는 합리 편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주차장 부지는 여수시 기준이 현시점에 부족함으로 보다 더 보강하여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이 확보 될 것이 사료 됩니다.

2021. 3. 2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redacted]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별첨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총괄 의견

○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상위계획상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그림 3. 1. 1-4) 돌산 우두리 1181번지 일원’의 미지정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안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림 3. 1. 1-9) 오림동 497-2번지 일원’의 문수삼거리와 옛철길공원 사이의 미개발지역은 공원으로 편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표 3. 1. 2-2>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중 신설 봉산2지구의 경우 고도제한 내용이 ‘20층 이하 60m이하’이나 이는 과도한 개발 허용으로 조정되어야 함.

3. 대안

○ 개발위주의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토지이용 현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6.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2021. 4. 6.

심의위원



○ [redacted] (전남대학교 교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25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는 법정 중기계획 수립으로 여수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적인 계획 수립시 여수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SDGs 의제(탄소 중립도시 등)가 반영될 필요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지역 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적절하게 설정됨.

2. 토지이용 구상안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여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여수도시기본계획의 경관관리방향에 부합하는 경관지구 결정(변경) 등 적절하게 구상됨.

3. 대안

계획시행 시 용도지역 재정비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보호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가 기대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가 적절함.

평가 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설정됨. 적절함.

평가 방법: 전반적으로 적절함. 단, 홍수, 태풍 시 수환경의 보전 등 환경 영향 및 재해 예방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평가 방법 검토 요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6. 기 타

해당없음.

2021. 3. 25.

심의위원 : [redacted] 인)